[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*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1) 계약기간

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
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(2) 계약목적

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(3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
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
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[별표1]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3.01.01기준)

※ 개정 2022.12.28. 공고 요양기준실-제2022-2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름

○ 재가급여 월 한도액

수가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100%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120% (15회 이상 이용시) ※ 가족요양은 증액불가	2,028,000	1,700,640	1,567,440	1,345,320	12회 이상 이용불가

*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,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%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.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일반	기초수급자	기타의료수급자	
본인부담금 비율	15%	0%	감경 6%	감경 9%
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
○ 1회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(원)
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**공단**	**35,760**	**33,010**	**31,510**	**30,000**	**30,000**
	15%	5,360	4,950	4,730	4,500	4,500
	9%	3,220	2,970	2,840	2,700	2,700
	6%	2,150	1,980	1,890	1,800	1,80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**공단**	**47,960**	**44,270**	**42,770**	**41,240**	**41,240**
	15%	7,190	6,640	6,420	6,190	6,190
	9%	4,320	3,980	3,850	3,710	3,710
	6%	2,880	2,660	2,570	2,470	2,470
8시간 이상 ~ 10 시간 미만	**공단**	**59,660**	**55,080**	**53,580**	**52,050**	**52,050**
	15%	8,950	8,260	8,040	7,810	7,810
	9%	5,370	4,960	4,820	4,680	4,680
	6%	3,580	3,300	3,210	3,120	3,120

(4)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)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)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)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5)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)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)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
(5) 계약의 해제

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2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3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
4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②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가족사랑주간보호센터